#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78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 백승아·박수현·김문수

박지혜 • 이훈기 • 서미화

문금주 • 황명선 • 정진욱

이재강 · 홍기원 · 임광현

이연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 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 법률 제 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생 략)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승)
<u> &lt;신 설&gt;</u>		②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
		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
		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
		<u>지 아니할 수 있다.</u>